

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

의안번호	
의결 연월일	

제안연월일 : 2011년 3월 3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개정이유

-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“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”에서 “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”으로 변경함(안 제8조제2항)

부천시의회규칙 제 호

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2/3”을 “3분의 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정업무담당”을 “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<u>2/3</u>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결한 국외 연수 계획서를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국 <u>의정업무담당</u>이 된다.</p>	<p>제8조(회의) ① ----- ----- -----<u>3분의 2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의회</u> <u>운영위원회 전문위원</u>-----.</p>